의안 번호	102

2026. 10.

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

【자치행정국 소관】

창원시

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

【자치행정국 소관】

의안 번호	102

제출년월일 : 2026. 10. 16.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예산내역

(단위: 천원)

내 용	2026년	2027년	증감
(재)창원시장학회	500,000	500,000	-

3. 관련법규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2항 및 제3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4. 참고자료

○ (재)창원시장학회 출연금 현황

(재)창원시장학회 출연금

1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현황

○ 설립목적: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재 발굴·육성

○ 설립근거: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설 립 일: 2008. 7. 7.

○ 소 재 지: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, 진해구청 민원동 2층

○ 재산현황: 39.4억원(기본재산 38.5억원, 보통재산 0.9억원)

○ 임원현황: 17인(이사 15, 감사 2)

나. 2026년 예산편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증감
(재)창원시장학회 출연금	500,000	500,000	-

2. 법적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
○ 「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재산의 조성 및 운용)

3. 기대효과

○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 및 면학 분위기 조성

○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인재 양성 기여

붙임 1. 관련법령 1부.
2. 출연기관 현황 1부.

붙임1 관련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奬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재산의 조성 및 운용)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.

1. 창원시 출연금
2. 민간 출연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창원시장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창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,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붙임2 출연기관 기본 현황

□ 설립목적

○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·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 사업을 수행

□ 설립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

○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

□ 연 혁

○「진해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 : ‘08. 05. 30.

○ 진해장학회 설립 허가(경상남도교육청) : ‘08. 07. 07.

○ 진해장학회 설립 등기(창원지방법원진해등기소) : ‘08. 07. 11.

○ 진해장학회 사무국 현판식 및 출범 기념식 : ‘08. 07. 31.

○ 창원시 진해장학회로 명칭변경 : ‘12. 12. 14.

○「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 : ‘12. 12. 28.

○「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개정(명칭변경) : ‘17. 04. 20.

□ 소재지 및 재산현황

○ 소 재 지: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, 진해구청 민원동 2층

○ 재 산: 39.4억원(기본재산 38.5억원, 보통재산 0.9억원)

□ 조직구성

○ 임원현황: 17인(이사 15, 감사 2)

※ 당연직이사: 자치행정국장, 평생교육과장